

2026년도 글로벌 론치패드(PoC)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연장]**

글로벌 준비·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대상으로 해외고객실증(PoC)을 통해 해외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6년도 글로벌 론치패드(PoC)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글로벌 론치패드(PoC) 지원사업

유형	1유형글로벌 진출 (Go-to-Global)	2유형글로벌 준비 (Born-to-Global)
지원목적	글로벌 시장 진출 · 해외진출 고도화	글로벌 시장 타겟 BM 고도화 · 검증
지원대상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머징테크(Emerging Tech) 기업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창업 아이템과 사업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머징테크(Emerging Tech) 기업
지원기간	26. 7월~12월(6개월)	
선발규모	20팀 이내	30팀 이내
주요일정	모집공고(5월) → 선발(7월) → 운영(7월~11월) → 성과공유회 (12월)	
비고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불가

* 이머징테크 기업(Emerging Tech) :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차세대 에너지, 바이오 등 딥테크포함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화 타겟하여 기술적 완성도 (> TRL 6) 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상용화를 준비 중인 혁신 기업을 의미함

※ 교육비 포함 기업당 약 5천만원 지원(유형에 따라 차등)

□ 사업목적 : 글로벌 준비·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대상 해외고객실증(PoC)을 통해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선정규모** : 50개 사 내외 (글로벌 진출 20개사, 글로벌 준비 30개사)

※ **중복신청 불가**

○ 해당 사업은 **4대 과기원 권역***내에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

* 본사 소재지 기준(KAIST 중부권 / GIST 호남권 / DGIST 대경권 / UNIST 동남권)

** 다만, 대표자가 각 과기원 소속일 경우 소재지 관계없이 소속 기관으로 신청가능

2

유형별 모집내용

※유의사항 필독

본 사업은 '글로벌 진출(Go-To-Global)과 '글로벌 준비(Born-To-Global)' 중 1개 유형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진출(Go-To-Global)

○ (선발규모) 20팀 내외

○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 기업

1.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머징테크(Emerging Tech) 분야기업
2. 해외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고객 실증(PoC)이 가능한 단계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3. 영어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인력을 보유한 기업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우대사항

1. 딥 사이언스(Deep Science) 특화기업 우대
2.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
3. 2026년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글로벌 팀스) 선정 기업 우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 (지원내용) 해당 프로그램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미국 서부·동부권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예정

* (미국 서부권) AI·소프트웨어, 로봇틱스, 기후테크,, 바이오 헬스케어 등

* (미국 동부권) 국방, 정보보안, 우주항공, 핀테크, 바이오 헬스케어 등

-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한 해외고객실증 프로그램 발굴지원

-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PoC 기관 협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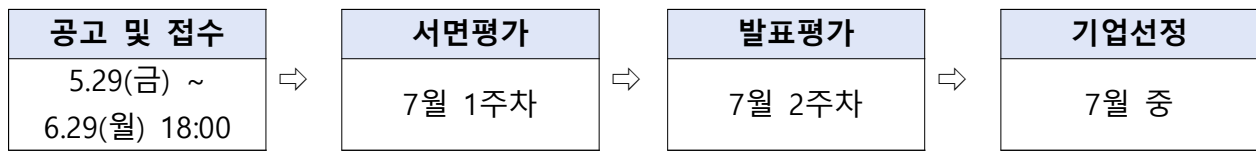
- 현지 방문에 필요한 경비(항공료+숙박비)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현지에서 사용하는 일비, 식비, 비자 발급비 등 기타비용은 기업부담

<세부 지원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기간
국내프로그램 7월~8월 (2개월)	■ 글로벌 론치패드(PoC) 콜로퀴엄 ○ 글로벌 앵커·진출 전략에 대한 콜로퀴엄 진행 -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글로벌 표준 IR Deck 구조 등 - 현지고객 PoC 프로젝트 과제 도출 ○ 밀착 멘토링 및 사전 실증 단계(Pre-PoC) - 국내외 EIR, VC 혹은 기관 매칭 후 사전 멘토링 진행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인프라활용 사전 실증시나리오 진행	6개월
해외프로그램 9월~11월 (3개월)	■ 패스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Fast Global Accelerating) ○ 해외 전문가 EIR 멘토링 - 고객 PoC 타겟팅 도출 과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 설정, 실행계획 수립 ○ 공동 실증(PoC) 프로젝트 수행 - 현지 파트너사, EIR 협력 글로벌 고객 검증 ○ 해외 현지 부트캠프	
성과공유회 12월	■ 성과공유회 - 글로벌 진출(Go-To-Global)·준비(Born-to-Global) 프로그램 성과 공유	

○ (선발일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글로벌 준비(Born-To-Global)**

○ (선발규모) 30팀 내외

○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 기업

1. 해외 시장 타겟팅이 명확하며,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은 이머징테크(Emerging Tech) 분야기업
2. 영어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인력을 보유한 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기업

※ 우대사항

1. 딥 사이언스 특화기업 우대
2. 5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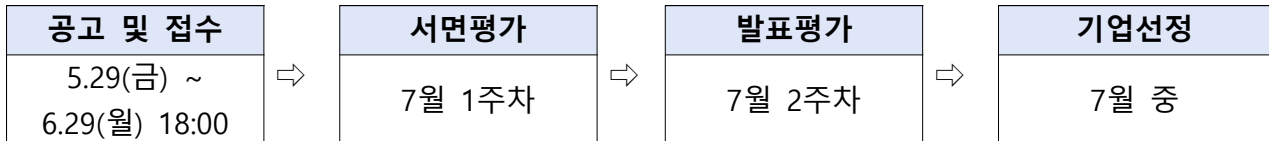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글로벌 진출 필수 역량강화 및 액셀러레이팅 교육 지원
 - 분야별 현지 컨퍼런스 참여 지원
 - 현지 방문에 필요한 경비(항공료+숙박비)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 현지에서 사용하는 일비, 식비, 비자 발급비 등 기타비용은 기업부담

<세부 지원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기간
국내프로그램 7월~9월 (3개월)	■ 글로벌 진출 필수 역량강화 교육 ○ 국내 중심 BM을 글로벌 수요자·고객 관점으로 재설계 ○ 분야 및 단계에 따른 모듈형 필수 교육 멘토링 ■ 사전 패스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Fast Global Accelerating) ○ 해외 전문가 EIR 멘토링 - 고객발굴·검증, 사업모델, IR 피칭 레슨 등 - 해외고객 PoC 사업모델 발굴 및 제품경쟁력 강화 (PoC 실행 단계 진입을 위한 시나리오 도출 및 고객 니즈 반영)	6개월
해외프로그램 10~11월 (2개월)	■ 분야별 컨퍼런스 참여 - (미국) 82Startup, Center, TechCrunch Disrupt DC Startup & Tech Week - (싱가포르) Switch ■ 후속 투자 유치 지원	
성과공유회 12월	■ 성과공유회 - 글로벌 진출(Go-To-Global)·준비(Born-to-Global) 프로그램 성과 공유	

○ (선발과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④ 지원 내용이 유사한 타 기관 해외실증 사업(PoC)
※단, 타 사업에 신청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 1개 사업만 수행 가능
-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⑦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⑧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⑨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⑪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이 반드시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신청기간(연장) : '26.5.29.(금)~6.29.(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웹 페이지(<https://launchpad2026.io/>)내 참가신청서 업로드

* 해당되는 권역별(KAIST 중부권 / GIST 호남권 / DGIST 대경권 / UNIST 동남권)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국문, 영문) 및 증빙서류 일체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붙임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hwp 또는 Word	신청기간 내 웹페이지 업로드 * 용량은 <u>20MB</u> 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② (붙임2) 증빙서류(우대사항 증빙 등)	hwp 또는 pdf	
③ 인터뷰 발표 자료(PPT/PDF)	추후 제출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제출

* 사업계획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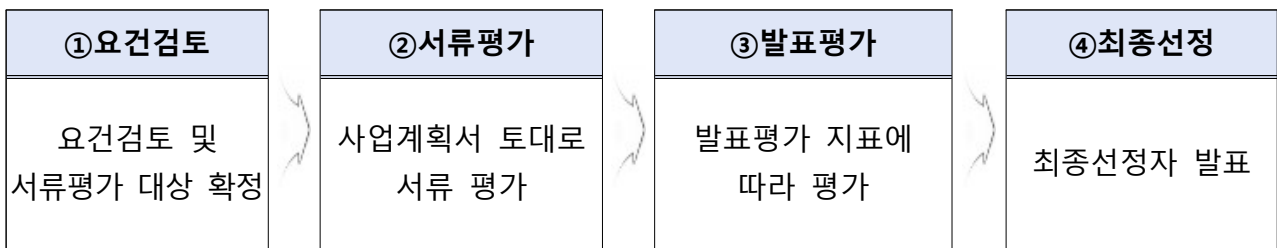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선정 절차(안) >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미 지원 대상이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선정대상에서 제외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

- ③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

-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참석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 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인터뷰 시간은 회 당 15분 내외이며, 영어로 진행

□ 평가지표(안)

○ (글로벌 진출)

구분	세부내용	배점	비고
평가항목	글로벌 진출 아이디어의 가능성 및 구체성	30	서류, 발표 동일,
	글로벌 고객 및 시장 검증 완성도	30	
	해외 파트너 협력 및 사업화 가능성	25	
	글로벌 진출 고객 자금 확보 가능성	15	
합계		100	

○ (글로벌 준비)

구분	세부내용	배점	비고
평가항목	기술완성도 및 글로벌 경쟁 BM 확보	30	서류, 발표 동일,
	글로벌 진출 의지 및 확보 역량	30	
	글로벌 시장 제품 및 사업 경쟁력	25	
	글로벌 진출 고객 검증 가능성	15	
합계		100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타 기관 해외실증(PoC) 지원사업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동시 수행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본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또는 워드(Word)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단,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 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선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적용

6

문의처

구분	접수기관명	전화번호 / 이메일
중부권	KAIST	☎ 042-350-6496, 042-331-1770
		E) global_startup@kaist.ac.kr
동남권	UNIST	☎ 052-217-1372, 1374
		E) global.startup@unist.ac.kr
호남권	GIST,	☎ 062-715-6305, 6307
		E) kcsda@gist.ac.kr
대경권	DGIST	☎ 053-785-1913, 1918
		E) startup@dgist.ac.kr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	------------------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업태는 변경될 수 있음